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9
----------	-----

2020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9월 4일 강남구청장, 의안번호 299호)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 9월 25일 강남구청장, 의안번호 299호)

나. 회의경과 : 제28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회의 : 2020. 9. 1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 : 2020. 9. 22.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부구청장】**
 - 국·과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보건소, 행정국】**
- 제3차 회의 : 2020. 9. 23.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국·과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 제4차 회의 : 2020. 9. 24.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국·과별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복지생활국】**
 - 1차 계수조정

- 제5차 회의 : 2020. 9. 25.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1차 계수조정 사업에 대한 국·과별 보충질의, 답변
 - 제2차 계수조정
- 제6차 회의 : 2020. 9. 28.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부구청장】
 - 국·과별 보충질의, 답변
 - 추가 계수조정
 - 계수조정 사업에 대한 국·과별 보충질의, 답변
 - 최종 계수조정
 - 수정가결 【수정안 발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부구청장 안준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사업예산 등 604억 7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09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9억 5500만 원, 특별회계 5억 500만 원으로 총 7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문화센터·도서관·평생학습관·구립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 수입 감소와 수강료 감면 등 134억 8500만 원의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136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6억 6000만 원의 추가 세입과 예비비 성격인 내부유보금과 행사·축제 사업 취소 등 불용될 예산 삭감액 156억 4200만 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극복을 위한 임차료 지원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12억 2400만 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금’ 33억 3000만 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지원’ 7억 7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한시적 지원’ 4억 1400만 원, 방역 및 인력 지원 8억 1900만 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총 45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강남 SOS 공동육아·실내놀이터’ 확충에 15억 7900만 원, ‘강남 힐링센터 운영’에 12억 8800만 원 등 구민 복지서비스 확대와 주요 사업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민선7기 2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납예산으로 총94억 1600만 원을 편성 하였음.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건축안전 무재해 추진을 위해 1억 원, 불법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2억 3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분야 보조금 반환 1억 6700만 원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효섭)

- 금번, 추경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편성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 구민의 안전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긴급하고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반영되었다고 봄.
- 따라서, 금번 편성 요구한 예산안 들이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있는 계획과 집행을 통해, 본예산이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사료 됨.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I. 일반회계

1 행정국

❖ 주민자치과

○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 사업내용 : 압구정동·개포4동 2개 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357,443	2,941,267	416,176	14.1%
자체재원	3,357,443	2,941,267	416,176	14.1%

- 의 견 : 내진설계 기준강화로 내진성능평가 용역대비 공사범위가 증가한 것임. 2019년 예산편성시 2013년 내진설계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경주(2017), 포항(2018)지진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2020년 내진보강이 2배 이상 강화되어 증편성한 것으로 보임. 다만,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문화센터 위탁운영(감편성)

- 사업내용 :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2,711,195	12,728,195	△17,000	△0.1%
자체재원	12,711,195	12,728,195	△17,000	△0.1%

- 의 견 :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센터 운영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센터 운영 관계자 워크숍 등 행사추진이 현실상 어려워 감편성하려는 것임.

○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감편성)

- 사업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635,285	657,255	△21,970	3.3%
시비보조금	59,360	59,360	0	0.0%
자체재원	575,925	597,895	△21,970	3.7%

- 의 견 :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워크숍 등 행사추진이 현실상 어려워 감편성하려는 것임.

❖ 민원여권과

○ 무인민원발급기운영

- 사업내용 :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59,687	260,732	98,955	38.0%
자체재원	359,687	260,732	98,955	38.0%

- 의 견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한티역, 보건소, 강남세무서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려는 것임. 역삼 및 강남세무서, 강남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임차료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역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바 무인민원발급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물이므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임차료 없이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2 기 획 경 제 국

❖ 지역 경제 과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144,000	3,144,000	1,000,000	31.8%
시비보조금	2,024,000	2,024,000	0	0.0%
특별교부금	700,000	700,000	0	0.0%
자체재원	1,420,000	420,000	1,000,000	238.1%

- 의 견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2020년 제1회 추경(발행액: 200억)에 반영된 사업으로 100억원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액 10퍼센트(서울시 5%, 강남구 5%) 할인보전금을 위한 예산임. 다만, 제로페이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우리 구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강남구가 운영주체인 바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일 자 리 정 책 과

○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감편성)

- 사업내용 : 미취업자 교육 후, 채용 연계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93,400	250,000	△156,600	△62.6%
국고보조금	70,000	175,000	△105,000	△60.0%
자체재원	23,400	75,000	△51,600	△68.8%

- 의 견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 당초 2개 사업 선정을 목표로 3개 사업(수요자패턴 빅데이터 분석 개발자 양성과정, IP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1인 미디어 소셜크리에이터 창업 과정)을 공모 신청했으나 최종 1개(사업수요자패턴 빅데이터 분석 개발자 양성과정)만 선정되어 감편성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3 뉴 디 자 인 국

❖ 뉴 디 자 인 과

○ 강남힐링센터 운영

- 사업내용 : 강남힐링센터(개포) 환경개선 공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733,897	4,445,635	1,288,262	29.0%
자체재원	5,733,897	4,445,635	1,288,262	29.0%

- 의 견 : 강남힐링센터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한 개포 3단지 기부채납 시설은 개포동 1281-1(디에이치아너힐스~개포도서관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기부채납 시설용도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¹⁾ 중 집회장으로 2020. 2. 7. 소유권이 강남구로 이전된 공유재산임. 기부채납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힐링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치의 적정성, 사업규모의 타당성, 주민의 요구에 따른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의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산업플랫폼 구축(감편성)

- 사업내용 : 데이터 기반 산업플랫폼 구축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0,000	1,900,000	△1,850,000	△97.4%
국고보조금	0	1,330,000	△1,330,000	△100.0%
자체재원	50,000	570,000	△520,000	△91.2%

- 의 견 : 이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국·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할 수 없게 된 바 예산원칙상 세입예산은 엄밀히 포착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것은 예산편성시 명확한 근거없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세입예산 반영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또한, 구비 잔액 5천만원은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이미 사용한 바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회계 원칙상 바람직한 예산집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2020년 본예산 검토보고²⁾를 참고하시기 바람.

❖ 스마트 도시 과

○ 스마트 강남 비전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소요재원

2) 2020년 본예산 <검토의견> 국비 13억3천만원, 구비 5억7천만원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성격상 사업성과물에 대한 우리구의 권리확보 및 성과물 공유가 어렵다고 보여져 자치구 수준에서 지원할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로 서울시는 이 사업에 지원이 없음.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38,962	407,000	31,962	7.9%
자체재원	438,962	407,000	31,962	7.9%

- 의 견 : 구청장실에 설치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와 공공장소에 설치한 CCTV를 상호 연계하기 위한 미디어게이트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현장 관리 및 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나 기존 구축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별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전 산 정 보 과

○ 정보화사업 발굴 및 운영(감편성)

- 사업내용 :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관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000	26,000	△22,000	△84.6%
자체재원	4,000	26,000	△22,000	△84.6%

- 의 견 : 빅데이터 연구용역비 2천2백만원을 전액 감편성하려는 것임. 감편성 사유는 스마트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세부사업내 통계목(207-01)인 연구용역비만을 이체³⁾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상 불가능하여 감편성하려는 것임.

3) 이체는 최소 세부사업 단위로 실행되는 것임.

○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내용 : 통합메시징 및 설문조사시스템 유지관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60,629	300,629	60,000	20.0%
자체재원	360,629	300,629	60,000	20.0%

- 의 견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2월 이후 구민에 대한 각종 알림문자발송이 대폭 증가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부족예산을 반영한 것임.

○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 사업내용 : 전화요금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82,000	546,000	36,000	6.6%
자체재원	582,000	546,000	36,000	6.6%

- 의 견 : 코로나19 로 인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등과 관련하여 행정전화 276대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부족분 전화요금을 반영한 것임.

○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 사업내용 : IP전화기 추가 구매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34,317	285,317	49,000	17.2%
자체재원	334,317	285,317	49,000	17.2%

- 의 견 : 2020.7.1. 조직개편에 따른 IP행정전화기 50대 신규 설치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예비품까지 소진되어 예비용 IP전화기 20대 확보 IP전

화기 70대를 추가 구매하려는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과

○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신규)

-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인력 인건비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59,840	0	159,840	순증
국고보조금	79,920	0	79,920	순증
자체재원	79,920	0	79,920	순증

- 의 견 : 해당 부서의 삭감요청이 있는 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감편성)

- 사업내용 : 지역문화예술단체 사업 보조금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76,060	224,360	△48,300	△21.5%
자체재원	176,060	224,360	△48,300	△21.5%

- 의 견 : 코로나19 사유로 2020년 상반기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사업계획이 보류되어 감편성하는 것임. 다만, 구체적인 감편성 사업 취소 및 축소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202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신규)

- 사업내용 : 봉은사 영산전, 북극보전, 영각 주변 전통방식 석축 설치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00,000	0	400,000	순증
국고보조금	200,000	0	200,000	순증
시비보조금	100,000	0	100,000	순증
자체재원	100,000	0	100,000	순증

- 의 견 : 봉은사 석축 정비사업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4)에 따른 전통사찰에 지원하는 보조금(국·시·구비·자부담) 매칭사업으로 보이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5)에서는 전통사찰을 지정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현대식 건축물이나 새로 신축하는 시설이 전통사찰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강남가족화합축제(감편성)

- 사업내용 : 제11회 강남가족화합축제 개최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00	374,275	△373,575	△99.8%
자체재원	700	374,275	△373,575	△99.8%

- 의 견 : 강남가족화합축제가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미 개최 의견이 많아 감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감편성)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① 삭제 <2012. 8. 13.>

②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내용 : 제23회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00	97,140	△96,340	△99.2%
자체재원	800	97,140	△96,340	△99.2%

- 의 견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우려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편성 하는 것임.

○ POP-UP Swimming Pool 운영(감편성)

- 사업내용 : 제2회 POP-UP Swimming Pool 축제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0	295,850	△295,850	△100.0%
자체재원	0	295,850	△295,850	△100.0%

- 의 견 :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지역사회로의 전염병 확산 등으로 POP-UP Swimming Pool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편성하고자 함

❖ 관 광 진 흥 과

○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감편성)

- 사업내용 : 국제관광전 참가 및 관광바이어, 해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99,809	344,009	△244,200	△71.0%
자체재원	99,809	344,009	△244,200	△71.0%

- 의 견 :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 박람회 취소되고 있어 참가 가능한 박람회가 없고, 해외 박람회의 경우 한국인 입국금지 정책 등 국외출장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감편성하는 것임.

○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감편성)**

- 사업내용 : 의료관광 업그레이드를 통한 해외 브랜드 마케팅 강화 등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95,714	1,141,714	△246,000	△21.5%
자체재원	895,714	1,141,714	△246,000	△21.5%

- 의 견 : 코로나19로 외국인환자 입국제한, 해외 설명회 불참,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취소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바 감편성하는 것임.

4 보 건 소

❖ **질 병 관 리 과**

○ **취약지역 방역소독**

- 사업내용 :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 차단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90,783	563,223	27,560	4.9%
자체재원	590,783	563,223	27,560	4.9%

- 의 견 : 신종코로나 확진자 이동동선 포함 장소 방역소독이 강화되어 근무시간 연장으로 수당 증가 및 소독작업 소모품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감편성)

- 사업내용 : 민간 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원,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82,632	309,330	△26,698	△8.6%
기금보조금	282,632	309,330	△26,698	△8.6%

- 의 견 : 결핵환자 감소로 결핵전담인력 1명 신규채용계획을 취소하여 감편성함.

○ 국가예방접종 실시

- 사업내용 :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8,035,993	6,893,524	1,142,469	16.6%
국고보조금	2,289,544	1,946,803	342,741	17.6%
시비보조금	3,035,964	2,568,783	467,181	18.2%
자체재원	2,710,938	2,377,938	332,547	14.0%

- 의 견 : 2020-202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기존 65세 > 62세 이상, 13~18세 추가)로 인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편성한 것임.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30,420	156,920	73,500	46.8%
특별교부금	156,920	156,920	0	0.0%
자체재원	73,500	0	73,500	순증

- 의 견 :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운영비는 치료키트를 구입하고 전담반은 부서인력, 찾동인력, 희망일자리 인력

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설명은 필요해 보임. 선별진료소 비상구급차 운행은 보건소 구급차 2대 이외에 자가격리자를 위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사설 구급차 이용에 대한 설명과 업체 선정 방법과 이용금액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해외입국 자가격리 관리 공용폰은 모든 직원들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 공용폰이 필요한지 설명은 필요해 보임.

❖ 건강 관리 과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49,640	318,550	31,090	9.8%
기금보조금	104,896	95,570	9,326	9.8%
시비보조금	122,372	111,490	10,882	9.8%
자체재원	122,372	111,490	10,882	9.8%

- 의 견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자가 확대(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가구)되어 증편성한 것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감편성)

- 사업내용 : 일정 소득 이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83,474	483,924	△100,450	△20.8%
기금보조금	96,734	125,652	△28,918	△23.0%
시비보조금	165,840	201,606	△35,766	△17.8%
자체재원	120,900	156,666	△35,766	△22.8%

- 의 견 : 난임부부 시술비 국비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되어 감편성한 것임.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감편성)

- 사업내용 : 일정소득 이하 고위험 임신부의 관리, 치료 진료비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8,257	51,310	△23,053	△44.9%
기금보조금	8,467	15,390	△6,923	△44.9%
시비보조금	9,895	17,960	△8,065	△44.9%
자체재원	9,895	17,960	△8,065	△44.9%

- 의 견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비 예산 축소 및 건강보험적용 확대 로 의료비 지원 대상금액이 감소하여 감편성한 것임.

<종합의견>

○ 2020년 제2회 행정재경위 소관 추경예산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축제, 체육대회, 워크숍 등 대규모 행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여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감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건소의 예산 증편성은 선제적으로 집행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도 못하고 감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부서는 해당 사업부서에 예산관련 자료를 받아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I. 일반회계

1 복지 생활 국

❖ 복지 정책 과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사업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7,185,248	7,120,064	65,184	0.9%
자체재원	7,185,248	7,120,064	65,184	0.9%

- 의 견 : 지난 1회 추경에 인건비(2개월 83,800천원)지원. 금회 추가로 지원하는 사유 설명 필요. 인건비 지원의 구체적(시설별, 인력별 등)설명과 함께 구비(지원조건에 영구임대아파트 시설은 전액시비로, 법인직영시설은 시비 90%, 구비 10%로 되어있음)로만 전액 지원하는 사유 설명 및 시비지원여부 검토 필요.

○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 사업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보호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467,176	3,167,176	300,000	9.5%
국고보조금	1,542,708	1,542,708	0	0.0%
시비보조금	771,354	771,354	0	0.0%
자체재원	1,153,114	853,114	300,000	35.2%

- 의 견 : 「긴급복지지원법」 6) 등에 따른 사업. 지난 1회 추경에도 같은 사업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내 의료비(2,182,215원x200명=436,443천원)를 편성 요구하였고, “강남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신규)”에도 전액 구비로 의료비(1,000,000원x300명=300,000천원)를 편성 요구하였던 바, 금회 전액구비로 추가 편성 요구한 사유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운영 실적(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자 수, 지원액 등)과 연계 설명 필요

❖ 사 회 복 지 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7,106,000	12,376,850	4,729,150	38.2%
국고보조금	10,260,000	7,422,510	2,837,490	38.2%
시비보조금	4,788,000	3,463,838	1,324,162	38.2%
자체재원	2,058,000	1,490,502	567,498	38.2%

6)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의 견 : 국시비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에 따른 사업으로 본 예산(임차급여 147,000원x7,000가구x12월=12,348,000천원)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가(임차급여 120,017원x9,851가구x4월=4,729,149천원) 편성 요구한 바, 증액 편성 요구한 사유의 설명 및 그간의 운영 실적(지원 대상 기준, 지원대상자 수, 지원액 등)과 연계 설명 필요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감편성)

- 사업내용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및 편의증진 도모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61,858	203,263	△41,405	△20.4%
시비보조금	76,559	97,262	△20,703	△21.3%
자체재원	85,299	106,001	△20,702	△19.5%

- 의 견 : 본예산에 인력증원(3명→4명)예정므로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감편성 요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감편성) (p105)

- 사업내용 : 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08,366	281,281	△72,915	△25.9%
시비보조금	113,350	113,350	0	0.0%
자체재원	95,016	167,931	△72,915	△43.4%

- 의 견 : 감편성 사유가 전액 구비로 편성된 구비를 재원별 비율에 맞도록 감편성으로 되어 있는 바, 당초 전액구비로 편성한 사유 설명 필요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어 르 신 복 지 과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사업내용 :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비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187,164	3,086,865	100,299	3.2%
자체재원	3,187,164	3,086,865	100,299	3.2%

- 의 견 : 지난 1회 추경에 운영비 및 수강료(165,332천원)를 편성. 추가 편성 요구한 사유 설명 필요. 민간위탁사업비(402-03)내 물품구입 내역 및 용처 설명 필요

○ 강남70+라운지 확충(신규)

- 사업내용 : 강남구 新노년 문화 휴식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661,473	0	1,661,473	순증
자체재원	1,661,473	0	1,661,473	순증

- 의 견 : 지난 1회 추경에 편성 요구(2개소 확충 3,255,896천원)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던 바,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금회 편성 요구 내역 및 제1회 추경요구 내역과의 변동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

또한, 사무관리비(201-01) 내 임차료(30,000천원) 및 기타자본이전(406) 내 보증금(1개소, 8억원) 등이 편성 요구된 바, 구체적(위치, 규모, 설치계획, 사업내용, 임차추진현황, 주변임차료와 비교 등) 설명과 함께, 시설비(401) 내 설계비 및 공사비(646,800천원), 감리비 등이 편성 요구된 바, 시설에 대한 구체적(개요, 배치, 이용예상인원, 용도, 공사비 산출내역 등) 설명이 요구되며, 공사기간 및 준공일, 개관예정시기 등의 설명과 연계한

공사비 이월 여부의 검토도 필요해 보임

아울러, 관련 동의안(의안번호 제289호, 강남70+ 라운지 신설·운영 민간 위탁동의안. 2020. 7. 2 강남구청장 제출)이 제출된 바 연계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함

이와 함께, 자산취득비(405)내 각 물품 내역 및 용처 등의 설명 필요
또한,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코로나 19에 따른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효과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 후 코로나 19의 영향 등을 감안한 설치시기의 검토도 요구됨

○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 사업내용 : 매월 기초연금 차등 지급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63,489,957	63,241,643	248,314	0.4%
국고보조금	44,442,970	44,269,150	173,820	0.4%
시비보조금	9,523,494	9,486,247	37,247	0.4%
자체재원	9,523,493	9,486,246	37,247	0.4%

- 의 건 : 국시비보조사업. 그간의 지급기준 및 실적 등과 연계 설명 필요

❖ 보 육 지 원 과

○ 강남 SOS 공동육아·실내놀이터 운영

- 사업내용 : 실내놀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934,461	355,921	1,578,540	443.5%
자체재원	1,934,461	355,921	1,578,540	443.5%

- 의 견 : 지난 1회 추경에 편성 요구(1개소 추가설치 1,541,757천원)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던 바,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금회 편성 요구 내역 및 제1회 추경요구 내역과의 변동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

또한, 사무관리비(201-01) 내 월임차료(19,000천원) 및 기타자본이전(406) 내에는 보증금(1개소, 3억원 → 5억원) 등이 편성 요구된 바, 구체적(위치, 규모, 설치계획, 사업내용, 임차추진현황, 주변임차료와 비교 등) 설명과 함께, 시설비(401) 내 각 공사(공간조성공사 646,800천원, 인테리어 300,000천원)에 대한 구체적(개요, 배치, 예상이용인원, 용도, 공사비 산출내역 등)설명도 요구되며, 공사기간 및 준공일, 개관예정시기 등의 설명과 연계한 공사비 이월 여부의 검토도 필요해 보임

또한,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코로나 19에 따른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효과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 후 코로나 19의 영향 등을 감안한 설치시기의 검토도 요구됨
한편, 사업설명서 상에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는 바, 제3조8)에 놀이터의 위치를 정하고 있는 바, 위치를 특정하여 조례를 개정(위치를 별표에 규정 등)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여성가족과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 사업내용 : 취·창업 지원 사업, 평생교육사업, 학점은행제, 강사파견사업 등 추진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치) 놀이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에 둔다.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670,000	637,690	32,310	5.1%
자체재원	670,000	637,690	32,310	5.1%

- 의 견 : 지난 1회 추경에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36,993천원)지원. 추가 지원하는 사유 설명 및 손실(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 사업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에 따른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744,708	2,388,129	356,579	14.9%
자체재원	2,744,708	2,388,129	356,579	14.9%

- 의 견 : 지난 1회 추경에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221,092천원)지원. 추가 지원하는 사유 설명 및 손실(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 사업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에 따른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14,957	390,286	24,671	6.3%
자체재원	414,957	390,286	24,671	6.3%

- 의 견 : 지난 제1회 추경에 미편성하였던 바, 금회 손실보전금을 편성 요구한 사유 설명 및 손실(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소 행정 과

○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사업내용 : 위탁운영지원금 부족 예상분 추가 확보 및 월별 지급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270,446	2,174,596	95,850	4.4%
자체재원	2,270,446	2,174,596	95,850	4.4%

- 의 견 : 본 예산의 물량(2,200원t)에 물량을 증가(300t)하여 편성요구 한 바, 그간의 재활용품 반입량과 연계한 주된 증가 사유 설명 필요. 아울러, 위탁업체 현황 및 협약내용 등의 설명 필요.

○ 쓰레기 배출 주민안내용 동영상 제작(신규)

- 사업내용 : 배출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 홍보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5,000	0	15,000	순증
자체재원	15,000	0	15,000	순증

- 의 견 : 재활용품 배출 방법에 대한 상세설명 필요. 또한 그간 배출방법, 홍보방법 등의 설명과 연계한 동영상 제작의 필요성 설명 필요

2

도 시 환 경 국

❖ 공원 녹지 과

○ 가로 녹지 소규모 정비

- 사업내용 : 수서동 730번지 소재 해당 부지 내 임목폐기물(부산물) 처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575,416	375,416	200,000	53.2%
시비보조금	575,416	375,416	200,000	53.2%

- 의 견 : “로봇플러스 공간구축” 시설건립 계획(뉴디자인과 사업- 2020본 예산 시설비 등 1,064,099천원)에 따른 사업으로 시설에 대한 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간구성, 건립내용, 활용방안 등) 설명이 요구됨.

또한, 임목폐기물 적치장 현황(총규모(면적 등), 금회 정비 면적, 연간 발생량, 적치량, 처리량 등)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임목폐기물 처리현황과 연계한 앞으로의 처리 방안(대체 적치장 확보여부 등)등의 설명이 요구됨

○ 옥상녹화 · 텃밭 조성(감편성)

- 사업내용 :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 조성 등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84,250	297,500	△13,250	△4.5%
시비보조금	76,000	89,250	△13,250	△14.8%
자체재원	208,250	208,250	0	0.0%

- 의 견 :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편성

3 **안 전 교 통 국**

❖ **재 난 안 전 과**

○ **구민재난안전보험 가입(감편성)**

- 사업내용 : 구민 재난안전보험 제도를 도입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34,000	254,000	△220,000	△86.6%
자체재원	34,000	254,000	△220,000	△86.6%

- 의 견 : 서울시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감편성

○ 강남구재난관리기금 전출금

- 사업내용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재난상황 발생 등에
사용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25,303,405	3,303,405	22,000,000	666.0%
자체재원	25,303,405	3,303,405	22,000,000	666.0%

- 의 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9)에 근거한 기금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0)에 따라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긴
급대응 등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관내 코로나 19발생 현황 및
그간의 지원 기준 및 내역 등의 설명과 함께, 전출 후 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상세(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내역 등) 설명 필요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 도로 관리 과

○ 이면도로 유지보수

- 사업내용 :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 정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4,939,777	3,978,817	960,960	24.2%
자체재원	4,939,777	3,978,817	960,960	24.2%

- 의 견 : 본 예산 대비 24.2% 증가한 바, 그 간의 추진실적과 연계 설명 필요. 또한 전체 이면도로 현황설명 및 연도별 이면도로 유지보수의 구체적(예산액, 집행액, 실적 등) 설명도 요구됨

[특별회계]

1 도시 환경 국

❖ 건축 과

○ 건축안전 사업으로 무재해 추진

- 사업내용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128,000	47,999	80,001	166.7%
자체재원	128,000	47,999	80,001	166.7%

- 의 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 및 「건축법」 12)에 따른 사업으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로 사업개요,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3개소(자람어린이집, 아이트라움어린이집, 해맑은 어린이집)선정 사유의 설명이 요구됨.
아울러, 그간 화재취약 건축물 전수 조사 사항(대상, 내용, 결과, 향후 계획 등)의 설명도 필요해 보임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2) 「건축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마감재료 교체,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관리자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 제16416호(2019. 4.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주 차 관 리 과

○ 불법주정차단속관리

- 사업내용 : 불법(부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력관리 및 민원업무 처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B+C)	기정액 (B)	추경요구액(증감) (C)	증감률 (D=C/B)
계	961,998	724,267	237,731	32.8%
국고보조금	10,000	10,000	0	0.0%
시비보조금	15,900	15,900	0	0.0%
자체재원	936,098	698,367	237,731	34.0%

- 의 견 :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사업의 구체적(개요, 사업내용, 사업 실행과정, 사업 효과 등)설명이 요구됨. 또한, 관내 고정형 CCTV 설치현 황 및 그간의 단속 건수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임.

【 따로붙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 요지

“생 략”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별 첨

나. 수정내역 : 별 첨

다. 수정동의안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9. 28. 김세준 위원 외 1인

7. 심사 결과

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8. 소수의견 요지

“생 략”

9. 기 타

2020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